



# 자촉법 및 폐기물 관리법 개정안

- 환경부 자료 제공 -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생분해성수지제품”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았거나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합성수지재질”을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품·재료·용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를 제외한다)”를 “제품·재료·용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및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로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1.~10. (생략)  〈신설〉	제2조(정의) 1.~10. (현행과 같음) 11. “생분해성수지제품”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았거나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이라 한다)는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생략) 2. 합성수지재질로 된 포장재의 연차별 줄이기에 관한 기준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 억제) ① _____ _____ _____ 1. (현행과 같음) 2. 합성수지재질(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_____

②~④ (생략)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대기유해물질,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를 제외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②~⑥ (생략)

②~④ (현행과 같음)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_\_\_\_\_  
 \_\_\_\_\_  
 \_\_\_\_\_ 제품·재료·용기(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 및 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한다)  
 다) \_\_\_\_\_

②~⑥ (현행과 같음)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명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호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1의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에 한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동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별표 1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폐합성고분자화합물

- (1) 폐합성수지(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 (2) 폐합성고무(고체상태의 것을 제외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페인트 및 페락카

가. 페인트 및 락카와 유기용제가 혼합된 것으로서 페인트 및 락카 제조업, 용적 5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것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폐기물관리법시행령	폐기물관리법시행령
<p>제25조(기술관리대행자)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의 대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p>1. 환경관리공단 1의2. (생략) (신설)</p> <p>2. (생략)</p>	<p>제25조(기술관리대행자)</p> <hr/> <p style="text-align: center;">—————각호—————.</p> <p>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1의2. (현행과 같음) 1의3.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기술사가 개설한 사무소에 한한다) 2. (현행과 같음)</p> <p>제28조(사후관리대행자) 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p> <p>1. 환경관리공단</p> <p>2. (생략)</p> <p>제28조(사후관리대행자)</p> <hr/> <p style="text-align: center;">—————각호—————.</p> <p>1.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 2. (현행과 같음)</p>

나. 페인트 보관용기에 잔존하는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하여 유기용제와 혼합된 것  
 다. 페페인트 용기(용기 안에 잔존하는 페인트가 건조되어 있고, 그 잔존량이 용기바닥에서 6밀리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것은 제외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기술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기술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③ (사후관리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제2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의 종료시까지 사후관리를 대행할 수 있다. ☐